제24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

檢討報告書

【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2023. 9. 18.

社會建設委員會

專門委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19호로 2023년 9월 6일 이성수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9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자체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한 정책수립, 사업의 기획·운영 단계에 건축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건축 및 도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디자인 관리체계 개선, 디자인 업무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다. 건축 민간전문가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기본법」, 「건축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기반영

다. 입법예고(2023. 9. 5. ~ 2023. 9.10.):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지자체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한 정책수립, 사업의 기획·운영 단계에 건축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건축 및 도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디자인 관리체계 개선, 디자인 업무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제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이고 9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총괄건축가의 위촉 및 업무범위, 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조직 등 총괄건축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공공건축가의 위촉 및 업무범위를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청렴성 유지와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민간전문가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각각 수당 및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검토 결과

- 우리 구는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올해 2월부터 건축 민간전문가로 총괄건축가를 위촉하여 총괄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건축 민간전문가의 임기, 업무범위, 준수사항, 제척·기피·회피·해촉 및 수당 등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자료

1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전문가의 자격·업무범위·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말한다)
3. 대학에서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②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건축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축·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조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축민원 업무의 처리
3. 다수의 사업자 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및 관리
4.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기획·설계 등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